

진주강남 청년머뭇센터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모집 공고

입주자모집 공고일 [2026. 06. 30.(화)]

■ 공급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동 98

■ 공급대상 : 통합공공임대주택 12호(일반용 11호, 주거약자용 1호) * 전용면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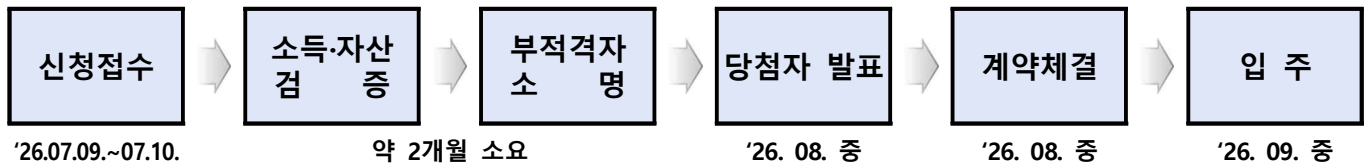
공급호수	26.47㎡	27.02㎡	27.18㎡	30.83㎡	31.47㎡	36㎡ (주거약자 1)	36.13㎡	36.27㎡
12	1	1	1	1	2	2	2	2

- 경남개발공사(055-269-0483)를 통해 입주자모집 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신청 관련 사항에 대해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 신청의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 자격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0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 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 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안내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 06. 30.(화)이며, 이는 입주자격(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 입주자격, 신청요건 및 일정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해당 일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 06. 30.) 현재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로서 자산·소득 기준 및 입주자격을 충족한 **청년(미혼,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자세한 신청자격은 해당 공고문의 p.15 5. 신청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자세한 신청자격은 해당 공고문의 p.15, 5. 신청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 택 소 유)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본인(청년)을 대상으로 조회
- (소득 및 자산) ① 신청자 본인(청년)이 세대주인 경우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조회**
 ② 신청자 본인(청년)이 세대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청년)을 대상으로 조회**

보유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통합공공임대주택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부채포함)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청 자격별 해당 세대 확인 후 작성)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 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 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 발생

■ 예비 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통합, 국민, 행복, 영구) 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 입주자로 선정 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 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 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 임대조건

- ① 동일 공급형의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내용을 정확히 숙지 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공고문 p.4, 2. 임대조건 참조)
- ②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은 세대 구성원의 소득, 자산 변동 등에 따라 변경 또는 할증 적용될 수 있습니다.
- ③ 임대조건이 변경(임대조건이 상한, 증액, 할증)은 공급신청(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및 갱신계약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정한 시점 기준) 시점의 입주자 소득수준 등을 확인하여 계약시점에 한하여 적용하며, 임대차기간 중에 입주자의 소득 변동 등에 따라 변경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④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최대 거주기간은 30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

- ① 신청접수는 경남개발공사 방문 및 우편(등기)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접수일 마감 시간까지 접수하여야 합니다.(2026. 07. 09. 10:00 ~ 2026. 07. 10. 17:00)
- ② 신청자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③ 계약체결 후 1개월(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 즉시 전입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1. 공급대상

■ 공급대상(총 세대수 12세대 - 일반공급 11세대, 주거약자 1세대)

공급 형별	세대 당 계약면적(m ²)					금회 공급호수			해당 호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 계	계	일반 공급	주거 약자			
총 계			기타공용	주차장							
36B (주거약자)	36.00	19.20	5.64	3.18	64.02	1	-	1	301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 개별난방	'26. 09.
36C	36.27	19.35	5.68	3.21	64.51	1	1	-	302		
36D	36.13	19.27	5.66	3.19	64.25	1	1	-	303		
31A-2	31.47	16.79	4.93	2.78	55.97	1	1	-	304		
31A-1	30.83	16.45	4.83	2.73	54.84	1	1	-	305		
31A	31.47	16.79	4.93	2.78	55.97	1	1	-	306		
36B	36.00	19.20	5.64	3.18	64.02	1	1	-	401		
36C	36.27	19.35	5.68	3.21	64.51	1	1	-	402		
36D	36.13	19.27	5.66	3.19	64.25	1	1	-	403		
27E-2	27.02	14.41	4.23	2.39	48.05	1	1	-	404		
27E-1	26.47	14.12	4.15	2.34	47.08	1	1	-	405		
27E	27.18	14.50	4.26	2.40	48.34	1	1	-	406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금번 공고는 무작위 전산 호실 추첨 후 당첨자를 발표하고, 당첨자에 한하여 주택 개방 후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 해당 주택은 세대 내 별도의 세탁기 미설치에 따라 공용 세탁실이 3~4층에 설치되어 있으며, 세탁기 사용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사전에 인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36B-301호)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되며, 일반인도 신청이 가능하나 경쟁 시 아래의 주거약자 대상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 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공급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총 주차대수는 25대로 지상 3대(장애인 1대 포함), 인근 부설 주차장 22대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주차대수 및 주차단위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시기는 '26. 09월이며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해당 주택은 임대료 외 세대별 관리비가 부과되며, 관리비는 주거전용 및 주거공용 면적의 관리비까지 추가로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사전에 인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1배수를 예비 당첨자로 선정(추첨) 및 순위 부여(추첨)하며, 예비 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주택 발생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2.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공급일정 [공고 '26. 06. 30.(화)]

신청접수	소득·자산 검증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입 주
[방문 및 우편 접수] '26. 07. 09.(목) ~ '26. 07. 10.(금) 10:00 ~ 17:00 (※12~13시 제외)	'26. 07. 13.(월) ~	'26. 08. 중	'26. 08. 중	'26. 09. 중
경남개발공사 4층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경남개발공사(gndc.co.kr)	진주강남 청년머뭇센터	진주강남 청년머뭇센터

- 방문 접수 및 계약체결 장소 : 경남개발공사 4층 주거복지팀(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4)
- 우편 접수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 244, 4층 주거복지팀
- 입주자격 검증조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등 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유의사항

- 신청접수는 방문 및 우편으로 진행됩니다.
 - 우편 접수 시 일반우편으로 접수받지 않으며, 일반우편 발송으로 서류 분실 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우편으로 서류 제출 시 접수기간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청약신청에 필요한 신청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거짓 신청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을 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 신청자께서는 접수신청 시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신청자격

- ◇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상에 기재된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자는 무주택자,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고, 다음의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 소득·자산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 @% (세대원 수 우대비율 : 1인 20%p, 2인 10%p 가산)
- 자산기준 : 총자산 345,000,000원 및 자동차 45,420,000원 이하

■ 세부 신청자격

① 청년

[유의사항] 청년 계층의 소득 및 자산은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하되, 주택 소유는 신청자 본인만 검증

- 무주택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㉗ 공급신청자(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퍼센트(1~2인 가구의 경우에는 우대비율을 가산) 이하일 것
- ㉘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일 것(출생일 1986.06.29. ~ 2008.06.28.)
- ㉙ 혼인 중이 아닐 것

신 청 자	가구원 수	월평균소득	기 준
본인이 세대주인 청년	1인	4,359,205원 이하	170%
	2인	6,718,867원 이하	160%
	3인	8,038,554원 이하	150%
	4인	9,742,107원 이하	150%
	5인	11,335,079원 이하	150%
	6인	12,833,928원 이하	150%
본인이 세대원인 청년	1인	4,359,205원 이하	170%

-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인 청년은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소득·자산을 검증하며, 이때 세대구성원은 직계존·비속을 의미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세대원인 청년은 신청자 본인만 가구원수로 인정("1인")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301호)을 희망하는 신청자(일반공급_청년계층)는 공급신청서 작성 시 '주거약자용 주택' 란에 체크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301호) 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별도로 추첨을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호실 신청자가 없을 경우 일반공급 호실에 포함하여 추첨을 진행합니다.

4. 임대조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입주세대 월평균소득의 비율에 따라 시세 대비 임대요율을 차등 적용 (35~90%)하여, **동일 공급형 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세대 월평균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임대차기간 중 변경되지 않습니다.**

■ 공급형 · 소득구간별 임대조건

- 공급형 · 소득구간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6.30.) 현재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입주 순번이 도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개시일(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의 익일)이 속하는 연도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소득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으며,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을 모두 합산한, 건강보험료 등의 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득기준 및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형 · 소득구간별 임대조건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입주자의 경우에는 구간별 임대조건을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해당 시점의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조건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입주자 중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입주자의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제2호 가목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임대조건 상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 상한 대상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전 별도 안내 예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아래의 신청자】

- ① 생계 · 의료급여수급자
- ②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 ③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301호-36B(주거약자)】 소득 구간별 임대조건

[단위 : 원]

구 간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10%)	잔금(90%)	
1구간	6,033,000	603,300	5,429,700	87,770
2구간	6,895,000	689,500	6,205,500	100,310
3구간	8,619,000	861,900	7,757,100	125,380
4구간	11,204,000	1,120,400	10,083,600	163,000
5구간	13,790,000	1,379,000	12,411,000	200,610
6구간 (기타소득구간 포함)	15,514,000	1,551,400	13,962,600	225,690

■ 【302호-36C】 소득 구간별 임대조건

[단위 : 원]

구 간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10%)	잔금(90%)	
1구간	6,094,000	609,400	5,484,600	88,660
2구간	6,965,000	696,500	6,268,500	101,320
3구간	8,706,000	870,600	7,835,400	126,660
4구간	11,318,000	1,131,800	10,186,200	164,650
5구간	13,930,000	1,393,000	12,537,000	202,650
6구간 (기타소득구간 포함)	15,671,000	1,567,100	14,103,900	227,980

■ 【303호-36D】 소득 구간별 임대조건

[단위 : 원]

구 간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10%)	잔금(90%)	
1구간	6,094,000	609,400	5,484,600	88,660
2구간	6,965,000	696,500	6,268,500	101,320
3구간	8,706,000	870,600	7,835,400	126,660
4구간	11,318,000	1,131,800	10,186,200	164,650
5구간	13,930,000	1,393,000	12,537,000	202,650
6구간 (기타소득구간 포함)	15,671,000	1,567,100	14,103,900	227,980

■ 【304호-31A-2】 소득 구간별 임대조건

[단위 : 원]

구 간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10%)	잔금(90%)	
1구간	5,268,000	526,800	4,741,200	76,630
2구간	6,020,000	602,000	5,418,000	87,580
3구간	7,525,000	752,500	6,772,500	109,470
4구간	9,783,000	978,300	8,804,700	142,310
5구간	12,040,000	1,204,000	10,836,000	175,150
6구간 (기타소득구간 포함)	13,545,000	1,354,500	12,190,500	197,050

■ 【305호-31A-1】 소득 구간별 임대조건

[단위 : 원]

구 간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10%)	잔금(90%)	
1구간	5,145,000	514,500	4,630,500	74,850
2구간	5,880,000	588,000	5,292,000	85,540
3구간	7,350,000	735,000	6,615,000	106,930
4구간	9,555,000	955,500	8,599,500	139,000
5구간	11,760,000	1,176,000	10,584,000	171,080
6구간 (기타소득구간 포함)	13,230,000	1,323,000	11,907,000	192,470

■ 【306호-31A】 소득 구간별 임대조건

[단위 : 원]

구 간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10%)	잔금(90%)	
1구간	5,268,000	526,800	4,741,200	76,630
2구간	6,020,000	602,000	5,418,000	87,580
3구간	7,525,000	752,500	6,772,500	109,470
4구간	9,783,000	978,300	8,804,700	142,310
5구간	12,040,000	1,204,000	10,836,000	175,150
6구간 (기타소득구간 포함)	13,545,000	1,354,500	12,190,500	197,050

■ 【401호-36B】 소득 구간별 임대조건

[단위 : 원]

구 간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10%)	잔금(90%)	
1구간	5,819,000	581,900	5,237,100	84,650
2구간	6,650,000	665,000	5,985,000	96,740
3구간	8,313,000	831,300	7,481,700	120,930
4구간	10,806,000	1,080,600	9,725,400	157,210
5구간	13,300,000	1,330,000	11,970,000	193,480
6구간 (기타소득구간 포함)	14,963,000	1,496,300	13,466,700	217,670

■ 【402호-36C】 소득 구간별 임대조건

[단위 : 원]

구 간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10%)	잔금(90%)	
1구간	5,880,000	588,000	5,292,000	85,540
2구간	6,720,000	672,000	6,048,000	97,760
3구간	8,400,000	840,000	7,560,000	122,200
4구간	10,920,000	1,092,000	9,828,000	158,860
5구간	13,440,000	1,344,000	12,096,000	195,520
6구간 (기타소득구간 포함)	15,120,000	1,512,000	13,608,000	219,960

■ 【403호-36D】 소득 구간별 임대조건

[단위 : 원]

구 간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10%)	잔금(90%)	
1구간	5,819,000	581,900	5,237,100	84,650
2구간	6,650,000	665,000	5,985,000	96,740
3구간	8,313,000	831,300	7,481,700	120,930
4구간	10,806,000	1,080,600	9,725,400	157,210
5구간	13,300,000	1,330,000	11,970,000	193,480
6구간 (기타소득구간 포함)	14,960,000	1,496,000	13,466,700	217,670

■ 【404호-27E-2】 소득 구간별 임대조건

[단위 : 원]

구 간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10%)	잔금(90%)	
1구간	4,318,000	431,800	3,886,200	62,820
2구간	4,935,000	493,500	4,441,500	71,790
3구간	6,169,000	616,900	5,552,100	89,740
4구간	8,019,000	801,900	7,217,100	116,660
5구간	9,870,000	987,000	8,883,000	143,590
6구간 (기타소득구간 포함)	11,104,000	1,110,400	9,993,600	161,530

■ 【405호-27E-1】 소득 구간별 임대조건

[단위 : 원]

구 간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10%)	잔금(90%)	
1구간	4,226,000	422,600	3,803,400	61,480
2구간	4,830,000	483,000	4,347,000	70,270
3구간	6,038,000	603,800	5,434,200	87,830
4구간	7,849,000	784,900	7,064,100	114,180
5구간	9,660,000	966,000	8,694,000	140,530
6구간 (기타소득구간 포함)	10,868,000	1,086,800	9,781,200	158,100

■ 【406호-27E】 소득 구간별 임대조건

[단위 : 원]

구 간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10%)	잔금(90%)	
1구간	4,257,000	425,700	3,831,300	61,930
2구간	4,865,000	486,500	4,378,500	70,770
3구간	6,081,000	608,100	5,472,900	88,470
4구간	7,906,000	790,600	7,115,400	115,010
5구간	9,730,000	973,000	8,757,000	141,550
6구간 (기타소득구간 포함)	10,946,000	1,094,600	9,851,400	159,240

5.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

- 「민법」상 미성년자(19세 미만)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청년(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를 통해 미성년자도 공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세대구성원 전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검증(주택소유, 소득, 자산)의 대상이 됩니다.

세대구성원	비 고
• 신청자	-
•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 여부는 신청자의 본인에 한하여 검증하며,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의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주택소유가 확인되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하며,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세대 구성원(자격검증대상)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다음의 자는 해당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 주택소유여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청년)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후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거절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 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①과 ②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②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③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 등의 경우
 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② (분양권 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③ (분양권 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에 유의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 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 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⑪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일 것

*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내지 다목에 따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중 빠른 날)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자산보유기준 및 산정방법

■ 자산보유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하여 별도로 제정·고시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자산 가액 합계(자동차는 개별 자동차가액으로 판단)가 아래의 기준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 **총자산가액 : 345,000,000원 이하 / 자동차가액 : 45,420,000원 이하**
- 청년 계층의 보유 자산가액은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자산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입주자격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하며,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산정방법

구분	산정방법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총자산 자동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금융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 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총자산	기타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는 총자산 산정 시 자산합계 금액에서 차감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 경과년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 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소득기준 및 산정방법

■ 소득기준

- 소득금액은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을 모두 합산한 건강보험료 등의 보험료를 공제하기 전 금액으로, 신청자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아래의 기준비율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소득기준금액은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세대원 수		
	1인	2인	3인 이상
일반공급	170% 이하	160% 이하	150% 이하

- 청년 계층의 소득금액은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다만, 세대원이 있는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소득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소득정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이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하며,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6년 기준 금액) [단위 : 원/월]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대비(이하)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기타 소득구간				
	~30%	~50%	~70%	~100%	~110%	~120%	~130%	~150%	~160%	~170%	~180%	~190%	~200%
1인	769,271	1,282,119	1,794,967	2,564,238	2,820,662	3,077,086	3,333,509	3,846,357	4,102,781	4,359,205	4,615,628	4,872,052	5,128,476
2인	1,259,788	2,099,646	2,939,504	4,199,292	4,619,221	5,039,150	5,459,080	6,298,938	6,718,867	7,138,796	7,558,726	7,978,655	8,398,584
3인	1,607,711	2,679,518	3,751,325	5,359,036	5,894,940	6,430,843	6,966,747	8,038,554	8,574,458	9,110,361	9,646,265	10,182,168	10,718,072
4인	1,948,421	3,247,369	4,546,317	6,494,738	7,144,212	7,793,686	8,443,159	9,742,107	10,391,581	11,041,055	11,690,528	12,340,002	12,989,476
5인	2,267,016	3,778,360	5,289,703	7,556,719	8,312,391	9,068,063	9,823,735	11,335,079	12,090,750	12,846,422	13,602,094	14,357,766	15,113,438
6인	2,566,786	4,277,976	5,989,166	8,555,952	9,411,547	10,267,142	11,122,738	12,833,928	13,689,523	14,545,118	15,400,714	16,256,309	17,111,904
7인	2,854,545	4,757,575	6,660,605	9,515,150	10,466,665	11,418,180	12,369,695	14,272,725	15,224,240	16,175,755	17,127,270	18,078,785	19,030,300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마다, 959,198원씩 증가합니다.
- (사례)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수가 3인 가구이면서 월평균소득이 4,000,000원인 경우에는 4구간 임대조건 적용

■ 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며, 소득항목에 대한 설명 및 자료 출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정방법	
• 사업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1세대 1주택 및 1인 1주택 기준 공급

- 1세대(세대구성원)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1세대 내에서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세대주가 아닌 청년의 경우, 1세대 내에서 세대원인 청년 계층이 각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 : 부(세대주) + 형(세대원) + 동생(세대원) → 청년(형), 청년(동생) 각각 신청 가능)
- 금번 공고는 1인 1주택으로 공급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6.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 공고일(2026. 06. 30.)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위·변조 등으로 거짓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기본 제출서류

구비서류	비 고
【필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세대 구성원 전원 · (동의방법) 공고 시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자필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가 거부됨
【필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필수】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능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해지 처리될 수 있음
【필수】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내용 확인 후, 신청자가 자필 서명하여 제출 ※ 동의서 미제출 시, 신청·접수가 거부됩니다.
【필수】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 (기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필수】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 구성원(신청자 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ex 동거인)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필요한 경우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사람으로 주민등록표등본 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임대조건 상한 대상자 제출서류(계약체결 시 제출)

구 분	제출서류	발 급 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자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국가보훈부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소득인정액 산정결과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성평등가족부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수급자 증명서	

※ 미제출 시, 임대조건 상한대상에서 제외됨

■ 추가 구비서류(본인 또는 대리인)

구 분	구비서류
본인 직접 신청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기타 대리인 신청	① (인감증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7. 입주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 공급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우리공사 자체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며, 미신청, 미계약에 따른 잔여 동·호가 발생하여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금번 공고는 최초 입주자 12명 + 예비 입주자 12명(예비 입주자 1배수) 총 24명을 선발합니다.

8.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경남개발공사 홈페이지 (<https://gndc.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계약체결 안내

구 분	구비서류	
본인 계약 시	① 계약금(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 현장수납 불가	
	② 신청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③ 신청자의 도장(본인 서명날인 가능)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계약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인감증명 방식	서명확인 방식
	① 위임장(계약 장소에 비치) ※ 인감도장 날인 필수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신청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② 본인(계약자) 서명사실확인서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9. 기타 유의사항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접수]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신청접수 마감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합니다.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 원칙에 따라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합니다. 단, 세대주가 아닌 청년의 경우, 1세대 내에서 세대원인 청년 계층이 각각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06.30.)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됩니다.
- [자격검증 부적격자 소명절차]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제출하신 소명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8.12.11)에 따라 분양권등(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당첨자 발표일 이전에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당첨이 되더라도 계약이 불가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부적격 해제되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기간]** 최대 거주기간은 30년. 단, 입주자가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할증 임대조건 적용을 통한 계속 거주 가능 (단, 주택소유 부적격자는 불가)
- **[갱신계약]** 갱신계약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갱신 임대조건은 **갱신계약 시점 입주자의 자산·소득금액, 소득구간 및 임대시세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갱신계약 조건
①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② 자산·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갱신계약 체결이 가능하나, 임대조건외 할증 규정에 따라, 자산·소득 초과비율 등에 따라 소정의 할증이 부과됩니다.

- (*)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후 퇴거 시까지 무주택이어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갱신계약이 거절되고,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차량등록]**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의 타인소유 차량은 등록하실 수 없습니다.
 - **[전입신고]**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기타사항]**
 - 우리공사에서 제공하는 전화 및 방문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공고문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당첨 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을 우리공사로 서면통보(담당부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은 우리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세대모형,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시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팸플릿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 중에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주택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 입주개시 이전에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주택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등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입주예정 시기는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및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간주합니다.**
 - **입주 시 잔금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 본인 확인 후 세대열쇠를 교부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미납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제 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증금 대출은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해당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는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신청 및 계약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설치, 대출 등)는 우리공사와 무관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일반사항

- 입주 예정 시기는 **2026년 09월**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는 이삿짐 일부라도 반입할 수 없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사 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엘리베이터홀과 같은 공간은 공용이므로 관련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 관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하여질 수 있으며,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설물의 위치·구조·규모·색채와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결과, 지반현황 및 각종평가&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 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사업지구를 방문하여 (현장출입불가)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 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부여건

- 본 주택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서 건물의 뼈대는 철근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대 내·외부의 벽체는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시공되어 세대 간 방음에 취약할 수 있음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며, 욕실에는 난방시설이 없음
- 총 주차대수는 25대로 지상 3대(장애인 1대 포함), 인근 부설 주차장 22대이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주차대수 및 주차단위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인근에 주택이 위치하여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배치상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 세대에는 시설물 작동 시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주변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제한될 수 있음
- 옥상층은 안전사고 등의 사유로 출입이 불가함
- 본 주택 모든 세대의 현관 중문은 설치되지 않으며, 승강장 홀 및 복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세대 내부로 일부 전달될 수 있음. 또한, 현관 부위에서는 상대적으로 추위나 더위를 느낄 수 있음
- 승강로 인접 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세대 외부 창호에는 방충망이 설치되나 주변 환경으로 인해 방충망 격자망보다 작은 곤충이 실내로 들어올 수 있으며, 이는 하자가 아니므로 향후 교체 또는 변경이 불가함
- 발코니는 난방이 되지 않는 구역이므로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류, 배수배관, 배수트랩 등은 겨울철 동결 및 동파에 유의하여야 하며, 물청소용 수전(스프레이건)은 사용 후 반드시 수도꼭지를 잠가 동절기 동파로 인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만약, 사용상 부주의(수도꼭지 미잠금, 창문 개방 등)로 인한 동결 및 동파(누수 포함)로 인한 피해(타 세대 포함)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동결 및 동파 세대 입주자에게 있음
- 인터넷은 입주자가 개별로 통신 사업자(ISP)에게 가입하여 사용 요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함

- 한전으로부터 저압(380/220V)으로 전기를 공급받게 되며, 공용부 전기 기본요금이 한전 전기공급약관에 의해 사용 설비의 계약 전력량 기준으로 부과되어 세대별 전기요금 부담이 클 수 있음
- 도난이나 기물 파손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주택 내 CCTV 설치로 사생활 침해 등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음
- 주택 배치의 특성상 주택 내외의 보안등, 가로등과 차량의 소음 등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건물 입구 조경지역에 설치된 부동전은 관계자 외 사용을 금지함
- 상수도 요금은 각 세대 사용량(개별검침)과 공용부분 사용량의 합산 금액으로 부과됨
- **세대 내 세탁기 설치는 불가하며, 각 층(3~4층) 마다 공용 세탁실을 이용하여야 하고, 세탁 비용이 부과됨**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 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업체	
진주시 강남동 98	경남개발공사	건축	주식회사 동우토건	-	건축	조은 서지영건축사사무소
		전기	한국에너지이엔지 주식회사		전기	(주)해승기술단
		소방	주식회사 쇼우테크		소방	(주)청림이앤씨
		통신	주식회사 효영전기			

1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임대조건 상한

입주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급형·소득구간별 임대조건에도 불구하고, 임대조건 상한 금액만을 부담하게 됩니다. 단, 신청자의 미신청 시 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임대조건 상한은 자격검증 시점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입주자에게 주거급여 수급여부와 임대차 기간 개시일 기준 정부 고시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함에 따라, 적용여부 및 임대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류제출기간 이후(26.07.10.(금) 이후) 임대조건 상한대상에 해당하는 자격을 득하는 자는 계약체결 이전까지 해당 서류를 제출 시, 임대조건 상한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 ① (가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② (나목)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준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 ③ (다목)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성평등 가족부장관에게 등록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④ (라목)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상한계산 기준

-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주거급여 수급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담

주거급여	임대조건 상한
수급 O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에 입주자가 수령하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전환임대료 범위 내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급 X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제2호 가목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주거급여법」 제7조 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의미합니다.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전환임대료는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의 소득에 따른 기본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을 환산한 임대료를 의미합니다.
- 임대조건 상한 적용은 자격검증 시점 당시의 주거급여 수급여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시점에 한하여 적용하며, 임대차 기간 중 소득 및 자격변경 등에 따라 임대조건 변경은 불가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상한 임대조건

- 주거급여 수급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자(소득구간계수 1~2구간에 해당)"임에 따라, 임대조건 상한에 따른 임대조건은 1~2구간만 안내드립니다. 소득금액 검색결과 소득구간계수가 3구간 이하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임대조건 상한 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기존 임대조건과 동일

[주거급여 수급자가 아닌 경우] 상한 임대조건

- 공급형별 영구임대주택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고시단가(경상남도 진주시, 3급지)에 따른 상한 임대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임대차기간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기준단가 금액(해당 기준연도의 기준단가 금액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고시된 기준단가 금액을 적용)을 적용하여 산정함에 따라 아래의 임대조건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공급형	임대조건			
	계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약금(10%)	잔금(90%)	
31A	3,187,000	318,700	2,868,300	63,410
31A-1	3,122,000	312,200	2,809,800	62,120
31A-2	3,187,000	318,700	2,868,300	63,410
36B	3,646,000	364,600	3,281,400	72,540
36C	3,673,000	367,300	3,305,700	73,080
36D	3,659,000	365,900	3,293,100	72,800
27E	2,752,000	275,200	2,476,800	54,770
27E-1	2,681,000	268,100	2,412,900	53,340
27E-2	2,736,000	273,600	2,462,400	54,450

12. 갱신 임대조건

기본원칙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자산, 거주기간)을 갖춘 임차인에 대한 갱신 임대조건은 갱신계약 시점의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임차인 세대의 월평균소득구간에 해당하는 소득구간계수 (0.35~0.9)를 적용하여 산정한 임대조건으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5% 이내의 인상을 범위에서 변경 적용됩니다. 다만, 동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소득 및 자산기준 초과자는 제외하며, 자세한 사항은 「임대조건외 할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갱신계약 시점의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조건 산정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갱신계약 자격
 -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단, 자동차자산 기준 초과 및 주택소유 시 즉시 퇴거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갱신 임대조건 산정 방법
 -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갱신계약 시에도 임대조건외 상호전환은 불가합니다.
 - 갱신계약 시점의 임대시세로 산정하되, 종전계약 시 적용한 임대시세에서 우리공사에서 결정하는 임대조건 인상을 범위 내(최대 5% 이내)로 결정합니다.

임대조건외 할증

■ 할증조건

① 소득기준 초과

- 갱신계약 시 소득기준(6구간,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을 초과한 경우, 소득구간계수 0.9(6구간)을 적용한 갱신 임대조건(기본원칙)에 소득기준 초과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0%p 이하	105%	110%
	10%p 초과 30%p 이하	110%	120%
	30%p 초과	115%	130%

※ 30%p 초과 구간을 적용받는 사람은 해당 주택에 예비 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할증비율에 최초 갱신 시 10%p, 2회차 갱신 시 20%p를 더하여 할증하고 3회차 이상부터는 직전 적용받았던 할증비율에 10%p씩 계속 가산 할증됩니다.

② 자산기준 초과

- 갱신계약 시 자산기준을 초과한 경우, 갱신 임대조건(기본원칙)에 130%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하고, 해당 주택에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 갱신시 10%p, 2회차 이상부터는 직전 적용받았던 할증비율에 10%p씩 계속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다만, 규칙 별표5의2 제3호 마목에 따른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최대 거주기간(30년) 초과

- 입주자격을 갖추었으나, 최대 거주기간(30년)을 초과한 세대에 대한 갱신계약 시, 갱신 임대조건(기본원칙)에 다음과 같은 할증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합니다.

거주기간 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 시	거주기간 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10%	120%

■ **할증조건의 중복적용 시**

- 임대조건 할증조건(①~③)이 중복되는 입주자에 대한 갱신계약 시, 갱신 임대조건(기본원칙)에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부과합니다.

■ **할증조건 예외대상**

임대조건 할증 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대상에 해당하는 입주자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의2 및 국토교통부 고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할증(소득, 자산기준 초과에 한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규칙 및 고시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별표5의2(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를 초과하더라도 입주자격 구분별 소득구간 상한까지는 소득기준 할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주자격 구분	신청자격	임대조건
청년	① 세대원 수가 1명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170% 이하인 자 ② 세대원 수가 2명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대비 150% 초과 160% 이하인 자	6구간 적용

13. 편의시설 설치 안내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1. 경사로 설치	301호
화장실	2. 장애인 손잡이 설치(세면대, 샤워실)	

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농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사업소득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지방세정 자료	

		<p>-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p> <p>-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p> <p>-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p>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p>-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p> <p>-지방세정 시가표준액</p> <p>-국토부 차적정보</p>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p>-국토부 확정일자 정보</p> <p>-직권조사 등록</p>
	선박·항공기	<p>-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p> <p>-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p>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p>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p> <p>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p>	-금융정보 조회결과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p>-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p> <p>-지방세정 시가표준액</p> <p>-국토부 차적정보</p>

15.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4) 성장이 멈춘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5) 성장이 멈춘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생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 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 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 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 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 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